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5 ·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9조 삭제)

1) 법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신설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

나. 유해의 조사·발굴 계획 수립, 현장 보호조치, 희생자 유해 인정기준과 절차 및 유해의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1) 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신설에 따라 희생자 유해 조

사·발굴 계획 수립,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유해 발견 현장의 보호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고, 유해를 본가봉송, 국립묘지 봉안·안장 등을 하기 위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원 확인방법·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유해 신원확인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대상, 검사 자료의 보관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 신설)

1) 법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신설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검사 자료의 보관, 유전자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한 협조기관 예시에 경찰청 및 전라남도를 추가(안 제13조)

1) 진상규명 범위에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법 제3조제11호)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이 광주 외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협조기관에 경찰청과 전라남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바.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사무실”을 “사무실(광주사무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해 조사·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구·조사 기록 확인 결과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결과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제11조의4(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발굴된 유해가 제11조의5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신원확인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의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희생자의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5(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5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인 경우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인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이 발견된 유해인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신원확인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6(발굴된 유품의 보존)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유가족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1조의7(유전자 검사)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해로 판단되어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1조의5제2항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방불명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및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전자 검사는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8(유전자 검사 정보와 자료의 보관)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의7제2항의 유전자 검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2. 유해 및 유전자 검사대상자로부터 채취한 검사대상물

3. 유해 및 유전자 검사대상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와 자료 보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등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주광역시:”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7조2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라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법 제62조의2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으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0mm×90mm[백상지(150g/㎡)]

(색상: 하늘색)

(뒤쪽)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 위원장
직인
1.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증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유해 조사·발굴 통지서

일 정	조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발 굴	년 월 일 ~ 년 월 일					
장 소		(시·도)		(시·군·구) (리)		(읍·면·동) 번지	
조사 발굴 인원	대표자	소속:		계(직)급:		성명:	
	기타 인원	소속:		계(직)급:		성명: 을 포함한 명	
조사·발굴 사유							
기 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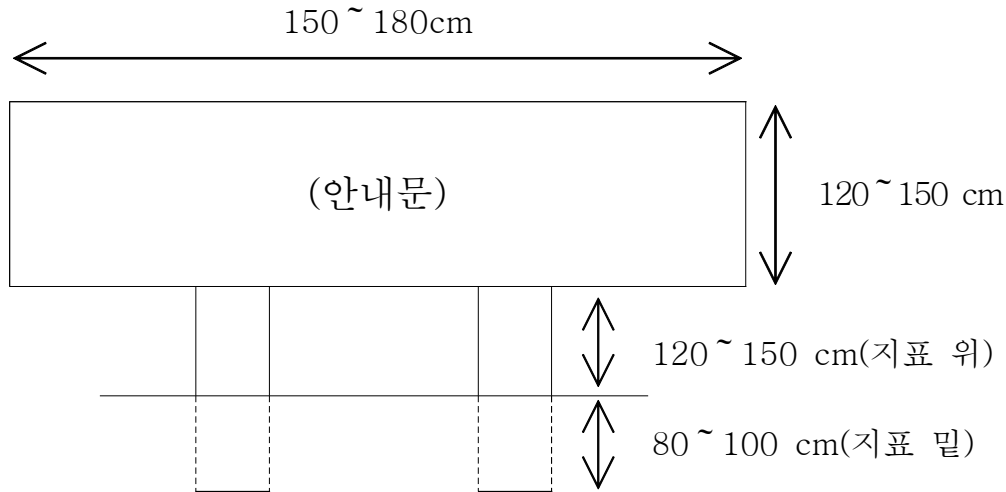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 하

안내판(예)

1. 안내판의 규격



가. 두께 및 재질: 2~3 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안 내 문 1. 이 곳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굴 및 수습되는 유해 및 유품 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화번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전화번호)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 ○ (예시, 법무부장관)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거주지 주소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현 거주지 주소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	재산 소재지		
	피해 중별		
	피해 수량		
	피해재산 산정금액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	--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임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지급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발급번호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주소		
보상 결정 사항	보상 원인		
	보상 금액	보상 일자	
	보상 방법		

그 밖의 사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가 손실을 입은 재산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

귀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

피해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

보상결정 금액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내용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임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u>별지</u>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무실(광주사무소를 포함한다)----- -----. ----- ----- ----- ④ ----- ----- ----- ----- ----- ----- 별지 제1호 ----- -----.

⑤ · ⑥ (생략)

<신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유해 조사·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구·조사 기록 확인 결과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결과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 설>

<신 설>

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제11조의4(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발굴된 유해가 제11조의5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신원확인 결과 명백한 증

<신 설>

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의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희생자의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5(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5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인 경우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
역에서 발굴된 유해인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
이 발견된 유해인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5·1
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
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
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史料),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
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등 유전
학적 분석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유해
의 신원확인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

<신 설>

<신 설>

된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6(발굴된 유품의 보존)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유가족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1조의7(유전자 검사) ① 법 제

27조의3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해로 판단되어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1조의5제2항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방불명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및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전자 검사는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신 설>

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8(유전자 검사 정보와 자료의 보관)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의7제2항의 유전자 검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2. 유해 및 유전자 검사대상자로부터 채취한 검사대상물

3. 유해 및 유전자 검사대상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와 자료 보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제13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생략)

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② (생략)

<신설>

하여 다른 국가기관등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

1. -----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

2. (현행과 같음)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7조2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라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법 제62조의2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은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
용을 조사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
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
항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지원과	
연 락 처	(02) 724 - 9126